

인증번호 :				
[] 건설기계 개별차량용 []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[] 철도차량				
수입자	업체명			대표자 성명
	주소			전화번호
	사업장소재지			전화번호
인증사항	원동기형식 /원동기코드	원동기제작사(국)	건설기계,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명칭 (형식)	건설기계, 농업기계 또는 철도차량 제작사(국)
	원동기 배기량	최대출력/회전수	사용연료	차대번호 (원동기일련번호)
				-차대번호: -원동기일련번호:
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				
※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		
인증조건				
1. 이 인증서는 ※란의 제원관리번호(형식승인번호)를 가진 개별차량용 건설기계·농업기계·철도차량에만 유효합니다. 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1조에 따른 결함시정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 3.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 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				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국립환경과학원장			직인	